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4.

발 의 자 : 서영교 · 이수진 · 민병덕

임호선 · 박홍배 · 조계원

박희승 · 박지혜 · 임오경
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자메시지·인터넷 홈페이지·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 등만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음. 또한, 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장소 또는 대담·토론회장에서 연설·대담·토론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확성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, 방음이 가능한 옥내에서까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음.

이에, 옥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제4호,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4호 중 “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”를 “옥외 공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”로 한다.

제9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59조제4호에 따라 옥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선거운동기간)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59조(선거운동기간)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(송·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,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)를 이용하거나 말(<u>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</u>)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옥외 공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</u> ----- ----- ----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第91條(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) ① 누구든지 이 法の規定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장소 또는 대담·토론회장에서 演說·對談·討論用으	第91條(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) ① ----- ----- -----

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. <u><단서 신설></u> ② ~ 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제59조제4호에 따라 옥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